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7. 박희승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8.20.)

상정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희승 의원)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

에서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2헌마356, 2023헌마189, 1305(병합) 결정]).

과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되어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한 현행법 제20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헌법재판소 소수의견(헌법불합치의견)과 같이 남아선호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있고,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태아 성별고지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인공임신중절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태아 성별고지 금지 규정을 일거에 삭제하기 보다는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동일한 취지로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현행 32주 이전에서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24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바,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